

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6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-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흥덕사지의 인쇄문화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승격시키고 그 명칭도 「청주고인쇄박물관」으로 하여, 고인쇄전문박물관으로 운영키로 하고
-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「청주고인쇄박물관」으로 등록을 필하였음 (1992. 12. 21)
-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 민족의 고인쇄문화수준을 세계에 선양하고 고인쇄전문박물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적지관리사무소를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증 "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"를 "충청북도 청주고인쇄박물관"으로 기관명칭을 변경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보관하고 있는 흥덕사지의 인쇄문화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승격시켜 1992. 12. 21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하였으며,

현재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로 되어있는 기관명칭도 충청북도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이에 관련한 조문을 개정교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첨 부

-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